



거창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거창군수

서명생략

2022년 3월 30일

거창군 훈령 제457호

### 거창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거창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거창군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공직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군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가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군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및 개발 업무 중 군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7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군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

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군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군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제10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군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군 퇴직공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 ① 군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군 또는 경상남도,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군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9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1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영 제3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징계양정 기준)** 군수가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법 위반행위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5조 관련)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1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16조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2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4조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3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4	마을정비구역 에서의 농어촌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
			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5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6	혁신지구재생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혁신지구의 지정
			제46조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7	물류단지개발 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수립
8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작성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0	산업단지개발	「산업입지 및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사업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 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40조의 2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11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 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12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13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14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15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16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별표 2]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1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경과 실인 경우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창제출 의무 위반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 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과면	과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 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과면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법 제20조 제2항 위반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 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과면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법 제20조 제4항에 따 라 준용되는 「공익신 고자 보호법」 제19조 제2항·제3항을 위반하 여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 제20조의2의 특별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과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 는 비밀 누설	과면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별지 제1호서식]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방법**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이해관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를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③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④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작성방법

-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③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 및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부동산 [ ]보유자 [ ]매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주소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

부동산	유형 [ ] 토지 (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 건물 (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	취득(예정)일
	소재지	
	지번	지목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input type="checkbox"/> ① 특수관계사업자
	연락처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		

거래상대방	②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	---

거래내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차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대부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물품 계약 <input type="checkbox"/> 용역 계약 <input type="checkbox"/> 공사 계약 <input type="checkbox"/>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계약상대자(확인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비용부담자	
	<input type="checkbox"/> 골프 <input type="checkbox"/> 여행 <input type="checkbox"/> 사행성 오락	<input type="checkbox"/> 신고인 <input type="checkbox"/> 퇴직공무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위와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위반행위 신고사항	신고내용		
종결처리	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일시	장소	
신고사항	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거창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022.5.19.)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제정.

## □ 제정목적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 5. 19.)에 따라
- 기관별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4. 30.까지 제정 마련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2303호, 2022. 2. 18.)

## □ 관련 법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b>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b>해야 한다.</li><li>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li><li>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li></ul>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권익위 예규 제266호)」 제2조(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이 예규와 별표1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b>기관별 자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b>해야 한다.</li><li>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li><li>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지정할 수 있다</li></ul> |
|--|

## □ 주요내용

- 제2조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감사부서의 장)
- 제3조~제5조 :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 회피·기피신청 및 이에 대한 조치
- 제6조~제7조 :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업무지정 및 이에 대한 조치
- 제8조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공개
- 제9조~제11조 : 직무관련자 거래신고, 가족채용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 등
- 제12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방법
- 제14조~제15조 : 위반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결과 통보사항
- 제19조 : 이해충돌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교육실시
- 제21조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 제22조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거창군 고시 제2022-34호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거창읍사무소)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창읍사무소 증축사업』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거창읍사무소)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4일

거창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82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공공청사:거창읍사무소)
  - 명칭 : 거창읍사무소 증축사업
3.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
  - 면적 : 7,011㎡
  - 금회시행면적 : 7,011㎡
  - 사업내용 : 거창읍사무소 증축(회의실, 창고) 건립[건축면적 1,274.79㎡(증300.00㎡), 연면적 2,649.86㎡(증473.8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연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계					7,011.1	7,011.1		
1	거창읍 상림리	820		대	7,011.1	7,011.1	거창군수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고시 제 2022-38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더샵 포르시엘 2차) 및 거창군관리계획(가지2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지형도면고시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23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6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4일

## 거 창 군 수

###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더샵 포르시엘 2차)

2) 사업주체

가. 상 호 : 주식회사 금호주택

나. 대표자 : 유한성

다. 영업소재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23, 504호(아진캐슬상가)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변경)

가.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23-4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23,132m<sup>2</sup>

다. 연 면 적 : 75,716.125m<sup>2</sup>

라. 규 모 : 아파트 6동(443세대),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실, 경로당, 경비실, 어린이집, 주민편의시설

마. 형 별 : 84A형(전용면적 84.9694m<sup>2</sup>), 84B형(전용면적 84.7560m<sup>2</sup>)  
84C형(전용면적 84.6131m<sup>2</sup>), 109형(전용면적 109.3039m<sup>2</sup>)  
119형(전용면적 119.4428m<sup>2</sup>), 141형(전용면적 141.8036m<sup>2</sup>),  
158형(전용면적 158.7591m<sup>2</sup>)

4) 사업시행기간 : 2022년 5월 ~ 2024년 9월(28개월)

2.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1)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 붙임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붙임]**

**I.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8	가지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거창읍 가지리 1323번지 일원	-	증)26,130	26,13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28	가지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 신설 26,130m <sup>2</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지리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토지이용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코자 함</li> </ul>

**2.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 26,130	26,130	100.0	
공동주택용지	-	증) 23,132	23,132	88.5	
도로용지	-	증) 2,998	2,998	11.5	

## 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1. 도로

####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294	8	국지 도로	367	소로 2-293	가지리 356-3	일반 도로	-	-	

####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2-294호선	· 노선신설 (B=8m, L=367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지2지구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진입도로 신설</li> </ul>

##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sup>2</sup> )	
I	1	23,132	거창읍 가지리 1323번지 일원	23,132	공동주택용지
I	2	2,998	거창읍 가지리 356-3번지 일원	2,998	도로용지

④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군관리  
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1	거창읍 가지리 1323번지 일원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용도 :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li> <li>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20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각적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li> <li>가구의 형상을 감안하여, 각 동의 배치방향이 통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li> </ul>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마감 손상으로 미관저해가 없도록 하며, 모든 외벽은 전면에 준하도록 통일되게 처리</li> <li>도로변에 접한 부분에는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하지 않도록 함</li> <li>기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름</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의 색채는 주변의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를 선택하되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의 색채 개념을 도입하여 계획</li> </ul>		

⑤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	거창읍 가지리 1323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지 북동변 및 북서변 차량출입 허용구간 설정</li> <li>차량출입 허용구간 외 차량출입 불허</li> </ul>	차량출입 허용구간 도면참조

※ 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고시 관련도면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끝.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3. 30.

거창군수

###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길 50-63 등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불용물품(데스크톱컴퓨터 및 모니터)매각 입찰 공고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불용물품(데스크톱컴퓨터 및 모니터) 매각

나. 매각대상 물품내역

(단위 : 원)

품명	규격	수량	구입년도	상태	매각 예정가격	비고
계		58			2,010,000	
데스크톱 컴퓨터	불임 물품내역 참조	32	2013~2014	폐품	1,280,000	거창군 청소년 수련관 및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집
모니터	불임 물품내역 참조	26	2008~2013	폐품	730,000	

※ 제품별 수량, 상태, 성능, 규격 등은 공고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현장에서 물품을 확인해야 함. 사전에 반드시 현물 확인 요망, 물품 인수 시 발생하는 비용 및 물품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은 응찰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 : 금2,010,000원(금이백일만원)

라. 보관장소 :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 거창군청소년수련관

라.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2022. 3. 29.(화) 15:00 ~ 2022. 4. 5.(화) 15:00

마. 입찰서 제출서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http://www.onbid.co.kr>)

바. 개찰일시 : 2022. 4. 6.(수) 15:00

사. 개찰장소 : 경상남도 거창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2. 현품설명

현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고기간 동안 구매자가 직접 물품이 보관(설치)된 장소에서 물품의 확인 등으로 갈음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물품 현장을 방문하여 물품 수량, 상태, 규격, 고장, 성능등을 충분히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물품문의 : 2022. 3. 29.(화) 15:00 ~ 2022. 4. 5.(화) 15:00, 근무시간에 한함

경상남도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임승준(☎ 055-940-8702)

### 3. 입찰참가 방법

- 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합니다)을 이용한 **전자 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동일인이 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무효 처리되며,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합니다.

### 4. 입찰참가 자격

- 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에 위배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시스템에 등록을 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자는 “온비드”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분할납부 불가**)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가능합니다.
  - ※ 은행 시스템 피크 시간대 : (오전 10:30 - 11:30 )(오후 14:00 - 16:00)(평일기준)
  - 가항 나항 미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시 입찰무효 처리.
-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6. 낙찰자 결정방법

-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준수규칙에 의합니다.

###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상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및 취소의 공고는“온비드”게재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 9.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 나. 낙찰자는 계약보증금액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매각대금은 우리 기관에서 발행한 징수고지서 기한까지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계약 시 제출서류 :

- ◎ 개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개인사업자 : 대표자도장, 신분증사본(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 각 1부

- 다. 대금완납 및 소유권이전등록 완료 후 현 상태대로 보관장소에서 낙찰자가 직접 인수하여야 합니다. 불용품 인수에 따른 상하차비, 해체비용, 마감비용, 폐기물처리비용 등 제비용은 매수자 부담입니다.

##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1. 기타 유의사항

-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 동시에 공고합니다.
-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물품의 현 보관(설치)상태로 매각하므로 입찰자는 입찰 전에 물품의 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매각물품은 보관 장소에서 낙찰자가 직접 인수하여야 합니다.
- 라. 입찰참가 희망자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시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마.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온비드:Onbid)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1588-5321)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http://www.onbid.co.kr> "온비드" 시스템상
    -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나의온비드 / 입찰내역 / 입찰서 제출 확인 /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
    - 입찰결과 : 나의 온비드 / 나의 입찰물건 / 입찰결과목록
-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청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205)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거창군물품관리관**

# 공 고

□ 제 목 : 토석채취 허가 신청 주민의견 수렴 공고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산45-1번지 일원에 토석채취 허가 신청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인근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토석채취 허가 신청 내용

신 청 지					신 청 사 항							비 고
면	리	지번	지적 (㎡)	지목	계	채취장	산물 처리장	진입로	관리 사무소	그밖의 시설	완충 구역	
합계			137,057		29,786	21,767		1,763			6,256	
신원	양지	산45-1	49,688	임	16,485	12,765		131			3,589	
		산45-3	52,857	임	11,669	9,002					2,667	
		산131	34,512	임	1,632			1,632				

2. 토석채취 신청기간 : 2022.4. ~ 2025.3.31.

3. 채취용도 : 토목용, 조경용

4. 채 취 량 : 295,000㎡

5. 의견제출

○ 공고기간 : 2022.3.29. ~ 2022.4.13.

○ 제출방법 : 서면제출(우편, 방문, 팩스)

- (주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산림과(055-940-3460)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67 신원면행정복지센터(055-940-7790)

※ (팩스번호)055-940-3459 / 055-940-7759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산림과(☎055-940-3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28.

## 거 창 군 수

## ●거창군 공고 제2022-557호

### 무인교통감시장치(신호 및 구간 단속)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교통사고 예방 방지를 위하여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30일

거창군수

#### 1. 행정예고 내용

- 설치목적 : 차량 운행속도 저감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 사업명
  - 거창군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설치
  - 주상면 구간단속 구매설치
- 설치규모 : 무인교통감시장치(신호과속 및 구간단속) 설치 1식
- 설치위치
  -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081-3(중산마을 앞) 양방향
  - 거창군 주상면 완수대경로당 → 주상삼거리(3.3km) 구간단속
- 주관부서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055-940-3382)

####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 3. 공고방법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년 3월 30일 ~ 2022년 4월 20일(21일간)

#### 5. 의견제출

-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E-mail 등
- 제출기관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교통담당)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 전화 : 055-940-3382
  - FAX : 055-940-3349
  - E-mail : beom0509@korea.kr

## 무인교통감시장치 설치장소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거창군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081-3번지 등 무인교통감시장치(신호과속)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